

「평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9. 12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9. 24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9. 24(월)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)

-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며,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(안 제6조)
-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(안 제7조, 제9조)
 -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.
 -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조례안 제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(안 제8조)
- 사업비의 지원 (안 제27조)
- 필요경비 또는 수당 (안 제2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 구성을 비롯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해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과
 -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, 사업비 지원 등 정책수행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업무 및 임무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 - 다만, 지역연대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형식적인 구성과 활동은 탈피하고,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부